

Client Alert

July 2017

말레이시아 이전가격의 대대적인 변화

도입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주십시오:

Adeline Wong
Partner
+603 2298 7880
Adeline.Wong@wongpartners.com

Michael Nixon
Director of Economics (Transfer
Pricing)
+65 6434 2535
Michael.Nixon@bakermckenzie.com

Krystal Ng
Senior Associate
+603 2298 7937
Krystal.Ng@wongpartners.com

Syn Joe Ong
Associate
+603 2299 6518
Synjoe.Ong@wongpartners.com

Rhu Vern Ang
Tax Manager
+603 2299 6517
Rhuvern.Ang@wongpartners.com

기소예
부장, 한국기업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말레이시아의 국세청은(Inland Revenue Board, 이하 "IRB")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012 의 (Malaysian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 이하 "TP Guidelines 2012") 챕터들을 점진적으로 수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번 발표된 업데이트의 핵심 목표는 말레이시아의 이전가격 규칙을 글로벌 규칙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독립기업간 거래원칙에 대한 IRB의 해석을 명확히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있습니다.

IRB는 첫번째 수정된 업데이트를 공개했으며, 새로운 챕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정된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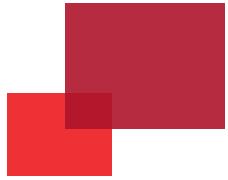
1. "독립기업간 거래원칙 (The arm's length principle)" - TP Guidelines 2012 에 업데이트 되었음
2. "무형의 자산 (Intangibles)" - TP Guidelines 2012 에 업데이트 되었음
3. "서류 (Documentation)" - TP Guidelines 2012 에 업데이트 되었음
4. "원자재거래 (Commodity transactions)" - 새로운 챕터로 추가되었음

패널티의 변경 또한 주목할 부분입니다. 금번 수정 및 업데이트를 볼 때, IRB가 말레이시아의 이전가격 사안들에 집중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

말레이시아는 OECD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2017년 1월 기준으로 inclusive framework on BEPS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의 회원국입니다. TP Guidelines 2012에 이루어진 수정 및 업데이트 등의 최근 변화는 IRB가 현지 이전가격 규칙을 OECD의 스탠다드와 일치하도록 하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실제 현장에서 말레이시아는 역사적으로 OECD 스탠다드의 확대 해석을 취해왔으며 OECD 스탠다드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해석은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에 업데이트 된 내용들과 새로운



챕터가 실제 어떻게 그 효력을 발휘할지 그리고 이전가격 감사와 분쟁 중인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즉,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OECD 스탠다드가 아닌 자체 해석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과세자가 조치를 취할 때,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더 유리한 스탠다드를 적용하여 해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된 내용들 및 새롭게 추가된 챕터를 시행해 나가는 동안, 기업은 서로 다른 스탠다드를 적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쟁거리들을 감안한 이전가격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에 대한 패널티 변경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며 조정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자들은 이제 이전가격 서류 준비에 세무계획 방식을 사용하여 조정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깊에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가격 감사 결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패널티가 3 배 증가한 바, 적당한 재원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결과에 대한 분쟁 발생시, 과세자들은 IRB의 감사 결과 부과한 금액과 패널티를 먼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의 요약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a) 패널티 비율 증가

서류에 대한 수정된 챕터는 TP Guideline 2012에 규정된 이전의 패널티 비율을 삭제했습니다. 새로운 패널티 비율이 업데이트되기 전까지 과세자들은 TP Guideline 2012에 규정되어 있던 이전 패널티 비율인 최대 35%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가격 감사에서 소득이 적게 신고되었거나 누락으로 발견된 경우, 현재 IRB는 과세자에게 패널티를 최대 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을 갖습니다. IRB는 같은 재량권을 갖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과세자는 최악의 상황에 미리 준비해 둘 것을 권고합니다.

이전가격 감사 프레임워크 2013에 포함된 새로운 패널티 비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법 내용	패널티 비율		
	일반적인 사건	자발적 공개 ¹	감사전 자발적 공개 ²
적은 소득 신고 혹은 소득 누락	100%	35%	15%
과세자는 이전가격문서를 준비하지 않음	35%	30%	15%
과세자는 이전가격문서를 준비하긴 하였지만 TP Guidelines 2012 의 요건을 전적으로 준수하지 못함	25%	20%	10%

노트: ¹ 과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감사 대상으로 고지받은 후 그러나 감사 시작 전, 자발적 공개

² 감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자발적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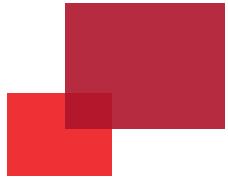
(b) 신설 요건: 마스터파일 (Master File,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를 (Country-by-Country)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과세자는 Income Tax (Country-by-Country) Rules 2016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또한 이제는 IRB의 요청이 있으면 이전가격문서와 함께 마스터파일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c) 무형자산에 대한 DEMPE 접근 도입

IRB가 제공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무형자산 거래를 포함한 통제거래를 진행하는 과세자는 이제 무형자산의 성숙상태를 5 단계로 구분하는 개발 (development), 개선 (enhancement), 유지 (maintenance), 보호 (protection), 활용 (exploitation) (무형자산의 새로운 측정방법, 이후, "DEMPE") 기능을 고려하여 IRB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익을 반드시 할당해야만 합니다.

IRB는 과세자에게 과세자의 이전가격정책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 계산되는 DEMPE 기능의 일부 요소들을 수행하도록 주장할 것 같습니다. 예로 들 수 있는 경우는 해외로 지출되는 로얄티 제한, R&D 서비스 비용 증가 혹은 법인의 성격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즉, 통상적인 기업을 사업가로 간주) 있을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에서 일부 기업들의 기능적 역할들을 고려할 때, DEMPE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더욱 중요하게 간주되며 그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말레이시아에서 DEMPE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비율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d) **원자재거래 (Commodity Transactions)**

연관기업간의 원자재거래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소개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연관기업간의 원자재거래를 테스트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규정합니다. 특히, IRB는 연관기업간의 원자재거래를 테스트하기 위해 "공시가격 (quoted price)"과 비교가능 제 3 자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이하 "CUP")의 사용을 강조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사점

지난 1년 간 IRB는 세금징수를 위한 집행에 매진했습니다. IRB는 달성해야 하는 세금징수 목표액을 높게 세워 광범위한 권한으로 세금 징수의 집행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전가격은 세금 징수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세자는 이전가격 정책을 마련하고 이전가격문서를 주의깊게 작성해 둠으로서, 이전가격 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잘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기소예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Wong & Partners에게 있습니다. 부분 혹은 전문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말레이시아는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의사교환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면 등 결과물을 공개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이 시행되는 사법권입니다. 세무변호사와 주고받은 기업의 민감한 사안들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